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 규정 삭제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69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 규정 삭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장학관)도 교육경력 없이 임용될 수 있어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를 고려했을 때,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명되는 것은 현행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하며, 교육 구성원의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1).

Ⅲ. 검토의견

1.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 규정 삭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하며, 교육 구성원의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1]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

기준 직명	자 격 기 준	
	현행	개정안
장학관 · 교육 연구관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	1.~5. (현행과 같음)

	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삭 제>
장학사 · 교육 연구사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1.~2. (현행과 같음)

비고

1. 이 표의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을, “전문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과정과 종전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지 근무를 위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으로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교육전문직원으로 규정함.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전문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은 학위 등에 더하여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추거나, 학위 등 소지자보다 오랜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 중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전문직원의 정의]

구분		근무기관
교육 전문직원	장학관 및 장학사	•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국·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국·공립 학교 -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한 국·공립 연수기관 -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국·공립 교육연수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시·도 교육 관서 • 교육연구기관 -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공립 기관		

자료: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정리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위 등	경력
장학관 · 교육 연구관	1	• 대학 · 사범대학 · 교육대학 졸업자 로서	•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 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로서	•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 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	• 2년 이상의 장학사 · 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	•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1	• 대학 · 사범대학 · 교육대학 졸업자 로서	•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 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	•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 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자료: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정리

□ 개정안은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 · 교육연구관에 임명되는 경우,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장학사 · 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 ·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하며, 교육 구성원의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학관 ·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장학관 · 교육연구관의 임용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① 교원과의 상호 전직 또는 ②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의 승진을 통해 임용됨.

① 교원과의 상호 전직을 통한 임용 절차에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② 승진 임용은 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행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용 절차에서는 모두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그리고 이러한 임용에 따라 최근 5년간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절차]

구분	① 전직 임용
근거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제1항,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제1항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
절차	- 국립·공립 학교 교원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 - 임용될 날 기준 <u>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u>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 <u>교육경력만으로</u>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할 때에는, 그 교육경력에 <u>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u>(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 <u>포함</u>되어야 함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 국립·공립 학교 교원 전직 임용 - 임용될 날 기준으로 <u>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u>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외의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임용될 날 기준으로 7급 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 -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u>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 이상</u>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고등

	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또는 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에 따른 자격 소지
예시	• 교사 → 장학사·연구사 → 교감 → 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장
구분	② 승진 임용
근거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절차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연수성적평정점 등이 포함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
예시	• 장학사·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

자료: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현행법에서 박사학위만 소지하여도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한 사유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다년간 연구경력과 이를 통한 전문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이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추 필요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현행 규정은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일정 기간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방식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경력이 포함되지 않은 ‘자격기준 제6호(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교원(교장·교감·교사)에서 전직 임용하고 있어,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체계에 맞지 않음.
- 또한, 최근 5년간 제6호 기준에 따라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는 사례도 없어 동 자격기준이 삭제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문 의 처

02)6788-5192